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33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9. 2. 27(수) 16: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33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9년 2월 27일(수) 16: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 재적이사 : 11명
- 출석이사 : 6명
- 출석감사 : 1명

사무국장이 제33회 임시이사회에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회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2019년 연간 이사회 운영 계획
3. 재단 운영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회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80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이사회장은 제180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 이사, ○○○ 이사, ○○○ 이사의 임기가 지난 2019년 1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임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 이사, ○○○ 이사의 임기가 2019년 3월 10일자로 만료예정인 연임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본 결과 ○○○ 이사, ○○○ 이사가 연임의사를 밝히셨다고 말하다. 연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공개모집이 생략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신임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세부절차로 이사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으로 ○○○ 이사, ○○○ 이사, ○○○ 이사가 수고해주셨다고 말하다. 공개모집 공고 전 제1회 이사회 소위원회(2019.1.11.)에서 초빙방법, 자격요건, 심사 기준(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9년 1월 15일 서울장학재단 비상임 임원 공개 초빙 공고를 하여, 1월15일부터 1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최종 7명이 지원했다고 말하다. 7명 접수자에 대해 제2회 이사회 소위원회(2019.2.8.)에서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했다고 말하다.

○○○ 이사가 사전 검토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자 전원이 우수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다. 다만, 검토 결과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교육, 훈련 및 지원사업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한 ○○○(○○.○.○○) 지원자, 청년창업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장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롤모델을 제시한 ○○○(○○.○○)지원자, 다양한 맞춤형 장학제도 수립 경험 등 장학재단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지원자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더 이상 의견이 없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투표결과 6명의 참석이사 중 각 6표를 득표하신 ○○○(○○.○○), ○○○(○○.○○), ○○(○○.○○) 지원자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 이사, ○○○ 이사가 연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81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

이사장은 제181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181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설명하고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기부금 사용승인 상세내역은 2018년도에 기부된 ○○○, ○○○ 기부금 1,084천원을 서울희망SOS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2019년에는 서울시에서 출연금 11,111,049천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이 기부금은 서울장학재단 운영비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서울시 교육정책과 협의를 통해 분기별로 입금하기로 되어있음을 설명하다. 분기별 입금 될 예정금액은 1~3월 목적사업비 288,404천원, 4~6월 목적사업비 4,881,410천원, 7~9월 목적사업비 2,622,623천원, 10~12월 목적사업비 3,318,612천원이라고 말하고, 10~12월 출연금 중 성과급 54,782천원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출연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다. 2019년 예정된 기부금은 총 300,000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에서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청계천꿈디딤 장학금으로 30,000천원, (주)○○○○○○에서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오토꿈이름서울 장학금으로 30,000천원, (재)○○○○○○(○○ 임직원 기부금)에서 결혼가정 자녀지원을 위한 청춘start장학금으로 100,000천원, (주)○○○○○○에서 저소득대학생 지원을 위한 유영아학업장학금으로 40,000천원, (주)○○○○○○에서 저소득 대학생지원을 위한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 성장학금으로 100,000천원이 기부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기부금들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181호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82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183호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184호 2018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

이사장은 제182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183호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184호 2018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2018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는 서울시의 추천 회계법인인 삼덕회계법인을 통해 외부재무회계감사를 받았으며, 2018년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 하고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사회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재무상태표를 설명하다. 유동자산은 14,482,043,070원이고, 비유동자산은 192,460,976원으로 자산총계 15,074,504,046원이라고 설명하다. 유동부채는 24,608,197원,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79,460,400원으로 부채총계 204,068,597원이라고 설명하다. 자본은 자본금(기본재산)이 13,600,000,000원, 이익잉여금 1,270,435,449원으로 자본총계 14,870,435,449원임을 설명하다.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사업수익은 11,742,818,259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사업비 11,180,911,988원, 일반관리비 845,895,193원으로 사업비용 총계는 12,026,807,181원이고, 사업손실이 283,988,922원이라고 말한다. 사업외 수익은 318,509,4036원, 사업외비용은 4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4,474,481원임을 설명하다.

2018년 세입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하다. 서울시출연금수입이 11,518,317,000원이고, 당기기부금수입이 201,084,000원, 전기이월금 1,054,312,676원, 전기 선급법인세 환급금 39,530,440원, 이자소득 254,423,185원, 기타수입 54,667,259원으로 세입총계 13,122,334,560원임을 설명하다.

2018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하다. 경상운영비 1,011,905,561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1%이며, 사업비 11,180,911,988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 차기이월금은 2019년 사용 예산으로 집행금액 0원이며 세출총계 12,192,817,549원임을 설명하다. 사업비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휴학, 타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한 반납금등이라고 말한다.

2018년 세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총계 13,122,334,560원에서 세출총계 12,192,817,549원을 차감하면 929,517,011원의 세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전액 2019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목적사업비 편성내역은 서울희망대학장학금 등 총 15개 사업이라고 말한다. 세부내역은 서울희망대학장학금 4,500,000원, 서울희망공익 장학금 73,000,000원, 서울평화희망 장학금 1,000,000원, 서울희망대학문화예술장학금 84,000,000원, 청춘Start장학금 27,000,000원, 유영아학업장학금 22,700,000원,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95,800,000원, 오토꿈이름서울 장학금 3,000,000원, 청계천꿈디딤장학금 23,000,000원, 서울꿈길장학금 150,500,000원,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100,000,000원, 서울희망SOS장학금 200,000,000원, 프로그램사업비 16,000,000원, 심사 및 선정경비 17,525,000원, 홍보사업비 111,492,011원이라고 설명하다. 내용 중 기 발송된 제33회 임시이사회 회의자료에서 장학사업 및 기관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비를 24,000천원 증액 편성하여 111,492천원 편성하였으며, 서울희망대학문화예술장학금을 24,000천원 감액하여 84,000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추가 설명하다.

이사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 감사에게 의견을 구하다. ○○○ 감사가 2018년 결산(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진행 했으며,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도 적정하게 작성을 했다고 설명하다. 다만, 정기예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므로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자산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정기예금 이외의 자산 운용방안에 대해 사무국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2018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및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2018년 세계 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2호 2018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183호 2018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184호 2018년 세계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85호 2019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

이사장은 제185호 2019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회의자료 통해 2019년 예산(안) 대비 2019년 실행예산을 설명하며 서울시 출연금 및 기부금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다. 2019년 세입 실행예산 총액은 12,606,873천원이며, 서울시 출연금 11,111,049천원, 기부금 수입 300,000천원, 전기이월금 929,517천원, 운용소득 266,30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 실행 예산은 총 12,606,873천원 이며, 사무국운영비 944,907천원, 장학사업 운영비 11,345,659천원, 예비비 및 기타 316,30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사무국장이 지난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된 사항이며 결산잉여금이 확정되어 예산 및 사업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말하고, 신규 사업으로 서울희망대학문화예술장학금, 서울꿈길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하다. 또한 기 발송된 제33회 임시이사회 회의자료 중 장학사업 및 기관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비를 24,000천원 증액 편성하여 111,492천원 편성하였으며, 서울희망대학문화예술장학금을 24,000천원 감액하여 84,000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추가 설명하다.

이사장이 2019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에 관한 의견을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호 2019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86호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86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인사규정에 임원의 임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임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인사 규정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를 개정하고 제54조(임원의 임면) 및 <별표5 임원자격기준>

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을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호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87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87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관련 내용 신설 및 유형 구체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내용 구체화,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행위기준 추가,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등의 금지 및 피감기관의 처리절차 규정화, 그 밖에 서식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개정,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개정, 제28조의 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서식 신설, 제39조(교육)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에 관한 의견을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7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2월 27일